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. 6. 12 선고 2017가단161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(개명전: C)

변론 종결 2018. 5. 29

판결 선고 2018. 6. 1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임야 357㎡ 중 17분의 15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06. 7. 27. 접수 제80()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경북 영덕군 D 임야 357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는 표의 소유였다.

나. E은 2004. 2. 19. 사망하였다.

E의 처(妻)인 F와 자녀인 피고, G, 원고, H, I, J, K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E을 상속하였다.

다.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.

그럼에도 피고는 2006.3. 2. 당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7500호, 이하 '특별 조치법'이라 줄여 부른다)이 정한 보증인인 L, M, N으로부터 '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'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(이하 '이 사건보증서'라 한다)에 서명을 받아 이를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였다.

라. 피고는 영덕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2006. 7. 27.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등기계 접수 제80이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(이하 '이 사건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마. 피고는 위 다.항과 라.

항 기재 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다.

위 법원은 2011. 1. 27.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벌금3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(위 법원 2011고합2판결).

위 판결은 2011. 2.8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4호증,을 제7,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것이므로,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19571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이 사건 등기는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보증서에 기초하여마쳐진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의 내용이 이 사건 등기의 내용과 같다는 추정은 깨어졌다.

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.

다만 이 사건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이전 소유자인 E의 상속재산이 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E의 상속인 중 1인이므로, 이 사건 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인 17분의 2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.

따라서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아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임야 중 17분의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